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동편의시설 BF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Study on Status of Barrier Free Certification & Improvement Strategies

박신원¹ · 조영태²Shin-Won Park¹ and Young-Tae Cho²

(Received October 4, 2016 / Revised October 30, 2016 / Accepted October 30, 2016)

요 약

본 연구는 지난 2007년 도입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의 확산과 정착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써 인증제도의 확산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실태를 파악하고, 인증가능성을 평가하여 인증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전국 여객자동차 터미널 349개소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 수준 현황조사를 시행하였다. 현황조사 결과 인증가능시설이 217개소, 인증불가시설이 58개소로 평가되었고, 인증가능성이 높은 29개 시설은 소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시설로 평가되었다. 실태조사 결과,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BF수준은 40~55% 수준이며, 평가분야별로는 내부시설이 90% 이상으로 수준높은 반면, 매개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등은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편의시설 수준제고를 위해서 BF 인증 시범사업을 제안하였다. 인증가능성이 높고, 지자체 지원의지와 사업주의 편의시설 개선의지가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대상으로 선정하고 편의시설개선을 추진하여 BF인증을 추진하고 모니터링하는 방안이다.

주제어 : 교통약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범사업, 실태조사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ctual condition of passenger terminals, public facilities which are used by unspecified individuals, with high spread effect of certification system of Barrier Free introduced in 2007, evaluate possibility of the certification and prepare an effective way for certification in order to spread and settle the certific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investigation on the facilities' equipment level of 349 passenger terminals, which being nationally operated, 217 terminals could be certified and non-certified were 58. And, 29 was evaluated as the passenger terminals with high possibility to get Barrier Free certification by small scale of remodeling. The level of Barrier Free of investigated passenger terminals, according to the actual condition with certification index, were 40~55 percent. While the level of Barrier Free of internal facilities of the terminals was over 90percent, the level of sanitary facilities, information facilities, etc. fell short of 50 percents. In this study, pilot project of Barrier Free certification is proposed for enhance of passenger terminal facilities. Moreover, the selection of passenger terminals with high possibility of certification, local governments' strong will as the targets of pilot project for improvement of amenity level and Barrier Free certification and monitoring the project results are the way of the project.

Key words: Disadvantaged Person, Barrier Free Certification System, Bus Terminal, Pilot Project, Survey of Actual Conditi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산업화와 환경오염에 따른 각종 질병의 확산, 자동차 증대에 따른 교통사고 증가와 산업재해에 의한 부상(負傷) 등으로 후천적으로 장애(障礙)를 갖게 되어 일상생활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가 선천

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의 이용을 위한 이동 및 접근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계획부터 검증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arrier Free Certification System, 이하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주저자: soka21@lh.or.kr)

2)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교신저자: ump2000@lh.or.kr)

1) U.N.의 「World Economic and Social Survey 2007 -Development in an Ageing World」에 따르면, 인구학적으로 젊은이와 노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60

인증제도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인 이동권과 편의성을 보장하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기초한다.

특히, 인증대상²⁾ 가운데 여객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 편의시설 설치를 통한 교통복지 실현의 효과가 높은 시설로 우선적으로 인증의 확산이 요구되는 시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객시설 가운데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인증제도의 확산과 정착 방안으로서 시범사업을 통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정책적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사회구성원을 위한 보편화된 생활환경의 조성방안을 모색하고자 인증제도 개선과 확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연구이다.

연구의 대상은 여객자동차 터미널로 주요 연구내용은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편의시설 실태조사와 인증분석, 인증확산을 위한 정책제안으로 구성하였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법, 제도적 여건과 더불어 현재까지의 인증현황을 파악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 실태조사에서는 전국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하여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다. 아울러 BF 인증가능성을 평가하여 정책제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정책제안에서는 인증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제안하고, 제도적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인증제도의 도입과 개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태동은 무장애운동에서 시작되었는

세기지만, 사회보장 등의 여건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65세로 구분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 등의 적용과같이 일반적으로 65세를 고령자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0년에 전체 인구의 7.22%로 이미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에 접어들었으며, 2008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약 500만명으로 10.32%에 이르는 노년인구국(老年人口國)이며, 2018년도에 이르러서는 14.34%로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인증대상)
1. 개별시설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2.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 및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데, 1974년 국제연합(UN)의 장애인 생활환경 전문가 회의에서 “장애물 없는 건축설계(Barrier Free Design)” 보고서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우리나라는 2007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무장애 도시 조성을 시작으로 인증제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2항내지 7항에 걸쳐 인증대상, 제도운영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교통약자법 제11조에 따라 여객시설 및 도로 등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인증규칙’)’을 통하여 인증제도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무기관³⁾이 일반적인 행정사항을 운영·총괄하고, 인증기관의 지정과 취소, 인증심사기준 제·개정 등 인증제도 전반에 관한 심의 기구로써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인증기관⁴⁾은 인증신청서의 접수, 인증대상의 심사·심의 및 인증서 교부, 인증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하여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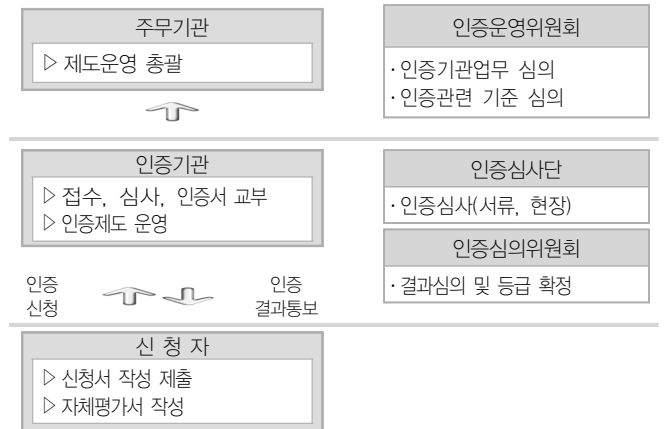


그림 1. 인증제도 운영체계

인증은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구분되는데, 예비인증은 인증대상의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을 통하여 본인증 전에 실시하고, 본인증은 공사 준공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에 시행한다.

인증제도의 인증심사기준은 인증대상별로 지역, 도로, 공원, 건축물, 여객시설 및 교통수단으로 구분되며, 여객시설에는 여객

- 3)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는 인증업무를 총괄하는 주무기관으로 2년씩 교대로 인증업무를 담당함
- 4) 인증제도에 따른 인증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3개 기관임

자동차 터미널,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환승시설, 공항 및 공항 시설, 항만시설 등이 해당된다⁵⁾).

인증을 위한 인증절차는 인증을 받기 원하는 자는 예비인증 또는 본인증 단계에 맞추어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고,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서류 및 현장검사를 실시한 후, 인증심의회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증의 가부(可否)와 이에 따른 인증 등급을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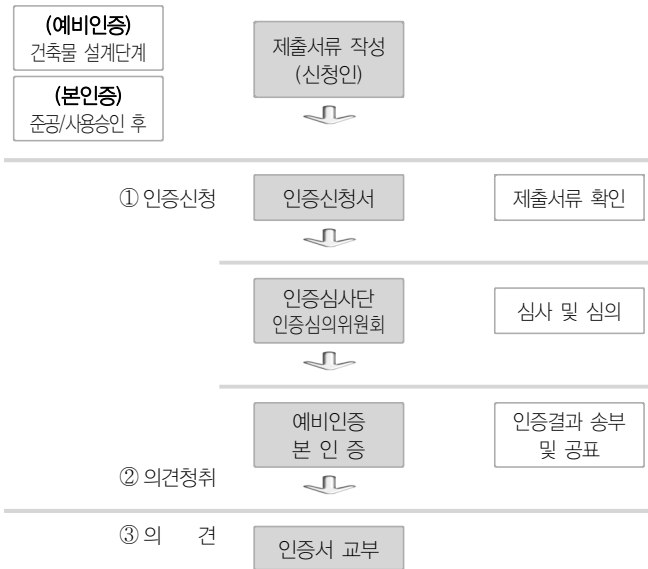


그림 2. 인증 절차

인증평가 지표 및 평가항목을 통해 산정된 평가점수에 따라 인증등급은 최우수, 우수, 일반등급으로 구분하며, 평가지표에 따른 채점결과를 총점기준으로 각 등급기준⁶⁾을 부여하며, 인증은 인증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본 연구의 대상인 여객시설은 76개의 인증지표로 구성되며, 인증지표는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등 5개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표 1).

표 1. 여객시설 BF 인증지표

범 주	
1. 매개시설	1.1 접근로 1.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1.3 주출입구(문)
2. 내부시설	2.1 통로 2.2 계단 2.3 경사로 2.4 승강기
3. 위생시설	3.1 장애인이동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3.2 화장실의 접근 3.3 대변기 3.4 소변기 3.5 세면대
4. 안내시설	4.1 점자블록 4.2 안내설비 4.3 경보 및 피난설비 4.4 접수대 및 안내소
5. 기타시설	5.1 매표소 및 판매기 5.2 개찰구 5.3 승강장
6. 종합평가	

2.3 BF인증 현황

2016년 4월 현재, 인증은 총 890건으로 인증대상 가운데 건축물이 812건(91%)로 가장 많으며, 여객시설(62건, 7%), 도로 및 기타시설(16건, 2%) 등의 순이다. 2008년 첫 BF인증 이후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2015년 1월 장애인등편의법의 인증의무 규정⁷⁾이 개정된 이후 더욱 확대되고 있다.

2016년 4월 현재, 인증을 받은 여객시설은 지하철 역사나 철도역과 같은 철도시설에 한정되어 있다(표 2 참조). 이들 시설 역시 신축된 시설이며 기존 시설을 개선한 사례는 전무하다. 이는 전술한 교통약자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관리 규정의 준수가 미흡함을 나타낸다.

표 2. BF인증 현황(2016년 4월말 기준)

구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4월말)
계	890	4	18	45	96	115	126	155	188	143
예비인증	646	3	13	33	79	89	87	92	123	117
본인증	244	1	5	12	7	26	39	63	65	26
계	890	4	18(5)	45(12)	96(7)	115(26)	126(39)	155(63)	188(65)	143(26)
건축물	812	4(1)	16(5)	39(11)	82(7)	111(26)	115(32)	138(60)	175(62)	132(24)
여객시설	62	-	-	3	13	1	10(7)	14(1)	11(3)	10(1)
기타	16	-	2	3(1)	1	3	1	3(2)	2	1(1)

* 2016년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 : 본인증 수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http://www.law.go.kr>)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마. 「항공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바.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6) 인증총점에 대한 득점 비율에 따라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90 이상(최우수),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0 미만(우수),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일반)으로 구분하여 인증을 부여함

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2015년 1월 28일 본조 신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 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BF)인증을 받아야 한다.

3. 여객자동차 터미널 실태조사

3.1 조사개요

전국의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대상으로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해당시설의 BF 수준을 평가하였다. 2014년 현재 전국의 여객자동차 터미널은 806개소이며, 이 가운데 가설건축물, 사무실 형태의 간이정류소 등 건축물로써의 요건이 미비하여 인증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시설(고속정류소 10개소, 시외정류소 447개소)을 제외한 여객자동차 터미널 349개소[시외버스터미널 193, 고속버스터미널 57, 종합버스터미널(시외+고속) 99]가 본 연구의 실태조사 대상이다.

3.2 실태조사 결과

3.2.1 지역적 BF 수준

전국 349개 여객자동차 터미널 가운데 인증평가에 따라 최고 점수를 획득한 곳은 광명종합터미널로서 168점 중 122점을 획득하였다(67.0%). 그러나, 현행 인증기준에 따라 70% 이상을 득점하여야만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국적으로 전무한 상황이며, 이는 모든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적절한 수준의 편의시설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국 광역시도별로는 평균 BF수준은 40~55% 수준이며, 평균적으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인천(54.3%), 울산(48.3%), 대전(47.8%), 경남(47.7%) 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전남(40.8%), 경북(41.0%) 등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이다.

지역별로 최고 60% 안팎으로 평가되었으며, 최저점은 30~40% 수준으로 지역내에서도 차이가 있으며, 특히, 경기, 강원, 부산, 충북 등은 지역 내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의 수준차이가 2배 이상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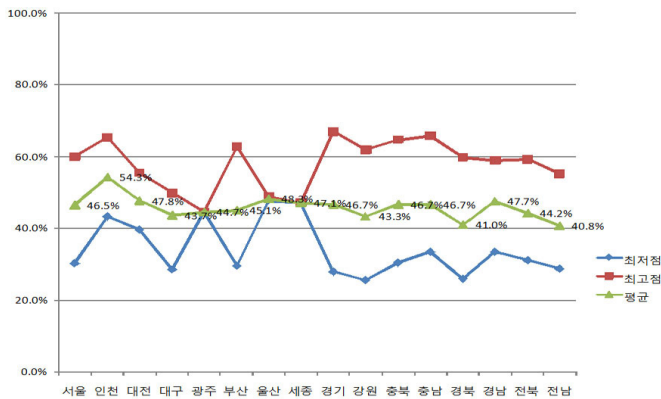


그림 3. 지역별 BF 수준

3.2.2 평가분야별 BF 수준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인증평가 지표는 매개시설(46점), 내부시설(40점), 위생시설(36점), 안내시설(24점), 기타시설(22점)로 배분되어 있다.

실태조사 결과(표 3), 평가분야별 시설 수준은 통로, 계단, 경사로, 승강기등 내부시설의 점수획득비율이 평균 92.9%로 매우 높은 편이나, 매개시설(39.8%), 위생시설(37.7%), 안내시설(12.3%), 기타시설(11.8%)은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안내시설 및 기타시설 부문의 점수 획득비율은 10% 안팎수준으로, 평가지표의 합리성 내지는 시설개선의 필요성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평가분야별 BF수준

분류	배점	수준 점수			수준 비율(%)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매개시설	46.0	2.0	36.7	18.31	4.3	79.8	39.8
내부시설	40.0	7.0	40.0	37.16	17.5	100.0	92.9
위생시설	36.0	0.0	30.5	13.56	0.0	84.7	37.7
안내시설	24.0	0.0	19.2	2.96	0.0	80.0	12.3
기타시설	22.0	0.0	5.2	2.60	0.0	23.6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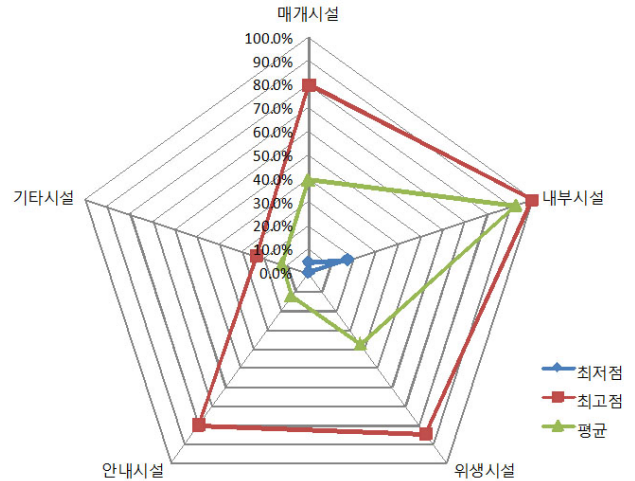


그림 4. 지역별 BF 수준

3.2.3 세부 평가지표별 BF 수준

세부 평가지표별 점수획득 상황을 살펴보면, 평균 점수획득 비율이 90% 이상인 세부평가항목은 주출입구의 ‘출입문 유효폭’, 통로의 ‘보행장애물’, ‘손잡이’, 계단의 ‘형태 및 유효폭’, ‘철크 및 디딤판’, ‘바닥마감’, ‘손잡이’, ‘점형블록’,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마감’, ‘활동공간 및 휴식침’, ‘손잡이’, 승강기의 ‘설치장소’, ‘전면 활동공간’, ‘승강기 크기’, ‘조작설비 높이’, ‘내부가로 조작설비’, ‘내부 손잡이’, ‘시각 및 청각 안내설비’, ‘점형블록’ 등 21개 항목이다.

접근로의 ‘종합안내소 접근성’, 안내소의 ‘안내소 구조’, 매표소 및 판매기의 ‘자동발매기’, 개찰구의 ‘개찰구’, ‘통과유효폭’, 승강장의 ‘승강장과 차량간격’, ‘스크린도어’, ‘승차위치 표시’ 등 9개 세부지표에서는 점수를 획득한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전무하다.

이들 9개 세부지표에 대해서는 평가지표의 실효성 내지는 필요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들 평가지표 자체가 국내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는 지표라 판단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검증 및 개선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3 BF인증가능성 분석

3.3.1 인증가능성 여부

전술한 전국 349개 여객자동차 터미널 현장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시설별 BF 인증가능 여부를 분석하였고, 그 중 간이정류장과 건축물 형태를 유지하지 못한 시설을 제외하여 275개의 인증유효시설 도출하였다.

표 4. 지역별 인증유효시설 현황

지역	실태조사 대상	인증유효시설		
		계	인증가능시설 수	인증불가시설 수
서울	6	6	3	3
부산	5	3	2	1
대구	9	9	8	1
인천	3	2	2	0
광주	1	1	0	1
대전	5	4	3	1
울산	3	3	3	0
세종	1	1	1	0
경기	46	29	25	4
강원	45	36	23	13
충북	22	18	14	4
충남	34	22	16	6
전북	36	30	27	3
전남	37	43	39	4
경북	40	36	24	12
경남	54	32	27	5
제주	2	0	0	0
계	349	275	217	58

또한, 인증유효시설 가운데 인증지표에 따라 구조, 지형(접근로), 승강장의 설치여부를 판단하여 인증가능시설(217개) 및 인증불가시설(58개)로 구분하였다(표 4).

지역별 인증가능시설은 전라남도(인증유효시설 43개, 인증가능시설 39개)에 가장 많으며, 광주광역시(인증유효시설 1, 인증가능시설 0)는 1개소의 인증유효시설이 구조상의 문제로 향후에도 인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제주의 2개 시설도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인증유효시설에도 포함되지 않고 인증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3.2 인증가능성 수준

인증유효시설은 275개 시설의 평균 BF 수준은 51.4%이며, 평가분야별로 나눠보면 매개시설 12.5%, 내부시설은 25.7%, 위생시설은 9.3%, 안내시설은 2.1%, 기타시설은 1.8%로 나타난다.

인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217개 시설에 대해 편의시설개선 여건과 실태조사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시설별 인증가능성 수준을 ‘상(29개)’, ‘중(44개)’, ‘하(144개)’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이들 217개 시설의 BF 수준 평균점수는 53.4%이다.

인증가능성 ‘상’에 해당하는 29개 시설의 평균점수는 62.3%, ‘중’에 해당하는 44개 시설의 평균점수는 56.4%, ‘하’에 해당하는 144개 시설의 평균점수는 50.5%로 분석된다. 이들 인증유효시설(217개)의 분야별 점수는 매개시설 12.6%, 내부시설 25.4%, 위생시설 9.3%, 안내시설 2.1%, 기타시설 1.8%로 나타났다.

표 5. 인증유효시설 범주별 BF 수준평가 결과

구 분	(단위 : %)				
	상	중	하	인증불가	전 체
매개시설	16.9	15.6	12.2	9.1	12.6
내부시설	24.3	24.9	25.8	25.1	25.4
위생시설	14.6	11.0	8.7	6.9	9.3
안내시설	4.3	3.0	1.8	1.0	2.1
기타시설	2.2	1.9	1.9	1.3	1.8
총합	62.3	56.4	50.4	43.4	51.4

인증가능시설의 세부항목별 점수와 인증유효시설의 세부항목별 점수를 비교하면, 내부시설을 제외한 매개, 위생, 안내, 기타 시설의 평가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인증점수가 높은 시설일수록 무장애디자인 적용률이 높고, ‘상’에 해당하는 29개 시설은 소규모 리모델링 공사만으로 BF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다.

4. 여객자동차 터미널 BF인증 시범사업

4.1 시범사업 성격 및 의의

정책적 차원의 시범사업은 ‘본 정책의 전면적인 집행에 앞서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공공자원의 낭비 등을 피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특정 정책의 효과나 작동기제를 사전에 측정 또는 관찰하기 위한 엄격한 사전설계를 바탕으로 집행되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삼열 등, 2009)⁸⁾. 법적으로도 시범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8) 이삼열 등(2009), 시범사업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pp.1-40

국토교통부 소관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이 있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으로는 ‘보건의료 기본법’, ‘의료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인증제도 관련 법규에는 미반영되어 있으나, 정책적 확산과 사전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BF인증 시범사업이 필수적이다.

4.2 시범사업 선정기준 및 시설유형

시범사업 대상 시설 선정을 위하여 시설의 인증가능성, 시설 여건과 같은 평가기준과 인증시험에 따른 개선효과 사업시행을 위한 시설의 예산 및 재무효과와 관계자의 사업추진의지와 같은 환경기준을 통하여 I ~ V 유형으로 구분하여 시범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유형 I 은 시설의 물리적 여건이 일부 개선하여 인증이 가능하며, 인증평가 종합점수가 높고 시설운영의 재무구조가 좋다. 해당 지자체 공무원과 시설 운영사업자의 사업이해도가 높은 시설, 유형 II 은 시설의 물리적 여건이 일부 리모델링을 통하여 인증이 가능하며, 인증평가 점수가 높고 환경기준이 보편적인 시설로 단계별 확산 사업대상, 유형 III 은 시설의 물리적 여건이 미비하지만 인증지표에 따른 인증가능성이 있고 환경기준이 미비한 단계별 확산 사업 대상 시설, 유형 IV 은 물리적인 시설 환경이 인증이 어려움에 따라 인증을 위한 시설개선 보다는 향후 인증제도의 정착시기에 시설개선을 통한 인증이 가능한 시설 및 유형 V 는 시설의 물리적 여건이 BF인증이 불가능한 시설은 시범사업에서 제외로 구분하였다.

표 6. 시범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

구분	평가기준		환경기준			평가결과에 따른 적용방안	시범사업 우선순위
	인증가능성	시설여건	개선효과	예산재무	관계자의지		
유형 I	●	상	●	●	●	시범사업 대상시설	높음 ↑ ↓ 낮음
유형 II	●	상	●	●	●	단계별 확산 사업대상 시설	
유형 III	●	중	○	●	○		
유형 IV	○	하	×	×	×	BF인증제도 정착을 위한 환경개선 대상시설	
유형 V	×	×	/	/	/	물리적 여건이 인증이 불가능한 시설	-

4.3 시범사업 추진 중장기 로드맵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1차년도에는 전국적인 BF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BF 인증 실현 여건, 지자체 의지, 시설운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유형 I 가운데 우선사업대상지 3~5개소를 1차 시

범사업대상으로 선정한다. 1차 시범사업 대상으로 BF 리모델링 설계와 자체평가서를 작성하고, 시설개선 공사와 BF 본인증 심사를 진행한다.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인증을 위해서는 사전 검토사항과 설계 및 자체평가서 작성이 선결되어야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인증을 강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 주도의 시범사업을 통하여 제도를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사전 검토 및 설계도서 작성, 모니터링 등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시설 개선 및 구축사업에 있어서는 지방정부, 사업자와 매칭펀드(matching fund) 형태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범사업의 중요한 과정중의 하나가 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고 추적하는 모니터링인 점을 감안하여 2차년도에는 새로운 (2차) 시범사업 추진과 더불어 반드시 1차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수반되어야 한다.

표 7. 여객자동차 터미널 BF인증 시범사업 중장기 로드맵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1차시범 (3~5개소)	조사 계획	시공	모니터링		
2차시범 (3~5개소)		공모	계획 시공	모니터링	
3차시범 (3~5개소)			공모 계획	시공	모니터링
4차시범 (3~5개소)				공모 계획	시공 모니터링
지자체 자율확산					백서발간 가이드북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여객시설인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편의시설 수준을 파악하고, 편의시설 수준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여객자동차 터미널 BF 인증 시범사업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는 ‘교통약자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인증규칙’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 4월 현재까지 상당수의 예비인증(646)이 진행된 반면에 본인증(244)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은 본인증에 대한 의무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인증이 의무화되었으므로 이에 인증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확대될 전망이다⁹⁾. 또한, 교통약자

법에 따라 시설을 개선(리모델링)하는 여객시설 및 도로 등은 BF 인증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경우에는 이미 전국적으로 양적인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로 향후에는 신규 공급보다는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리모델링 사업이 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여객자동차 터미널(806개) 현장 실태조사는 노상정류소를 제외한 349개소를 대상으로 2014년 5~6월(2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실태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BF 수준은 40~55% 수준이며, 광역지자체간 편차는 크지 않는 대신 지역내 수준차이는 2배 가량이다. 평가분야별 수준을 비교해보고 내부시설이 90% 이상 수준이 높은 반면에 나머지 매개시설(39.8%), 위생시설(37.7%), 안내시설(12.3%), 기타시설(11.8%)은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세부평가 지표별로는 주출입구, 계단 등 21개 항목은 90% 이상을 충족하는 반면에 종합안내소, 개찰구 등 9개 항목은 평가점수를 획득한 곳이 전무하다. 이는 평가지표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함을 의미한다.

349개 현장 실태조사 대상 가운데 인증유효시설은 275개소이며, 인증가능시설이 217개소, 인증불가시설이 58개소로 평가되었다. 또한 인증가능시설 217개소 가운데 인증가능성이 상(上)으로 구분되는 29개 시설은 소규모 리모델링 공사로 BF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시설군이다.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편의시설 수준제고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BF 인증 시범사업을 제안하였다. 인증가능성이 높고 [‘상(上)’ 그룹], 지자체 지원의지와 사업주의 편의시설개선의지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시설개선(리모델링)과 모니터링을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이동편의성을 증진하고 국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하여 교통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사업자 및 시민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범사업을 통하여 정책을 고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자 및 시민주도의 상향식(bottom-up) 정책추진을 통해 전국적으로 편의시설 수준제고를 확산하고자 한다.

시범사업을 통하여 기존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한 인증방안이 마련되어, 인증실적이 저조한 (도시)철도역사, 버스정류장, 공항 및 항만시설 등 기타 여객시설 인증대상으로 확산 효과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BF 인증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증의무를

현행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민간부문의 인증에 활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편의시설 면적을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거나 지방세 등을 감면하는 세금우대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인증제도의 사회적 기반마련을 위한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건축사, 시공사 등에 대한 관계자 교육이 중요한데 현재 3개소인 인증기관을 확대지정하고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심사기준 표준화, 홍보 및 전문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더욱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15년 국토교통부 수탁과제로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수행한 『여객자동차 터미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방안 수립 연구』의 내용을 정리, 보완함.

참고문헌

- 강태성(2016),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신원, 고치원(200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arrier Free) 인증제도의 도입과 활용”, 「토지와 기술」, 75(24): 19~56.
- 변용찬 등(2009),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08), 「장애인 차별금지법제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자료집」.
- 신연식(2000), 「교통약자를 고려한 교통수단제공 및 시설정비지침 연구」, 교통개발연구원.
- 신연식(2002), 「교통약자의 보행교통환경에 대한 평가와 정비방안」, 교통개발연구원.
- 이삼열 등(2009), “시범사업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1~40.
- 이영아, 진영환(2000),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 확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한국교통연구원, 건국대학교(2006),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보도 및 교통수단시설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연구」, 건설교통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한국토지공사(2007), 「장애물 없는 도시(Barrier Free City) 구축 및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사.
- 한국토지공사(200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표 및 심사기준」, 한국토지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2014), 「여객자동차 터미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방안 수립 연구」, 국토교통부.
- 和平好弘 (이신해, 도근섭 역) (2005),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교통의 Barrier Free」, 서울시정개발연구원.

9) 2015년 보건복지부는 편의증진심의회를 심의를 거쳐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2015~2019)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의 개정, 시행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신속하는 건축물(연간 1천여 건)이 BF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할 것으로 예측했다.

14. Tica, P. L. and J. A Shaw(1974), *Barrier Free Design Accessibility for the Handicapped*, The 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University of the State of New York.
15. U.N. (1956), "The aging of Population and its Economic and Social Implications", *Population Studies*, 26.
16. (社)土木学会土木計画学研究会・福祉の交通・地域計画研究小委員会・(財)災害科学研究所交通まちづくり学研究会 編著 (2008), *理解から実践へ 日本の交通バリアフリー*, (株)学芸出版社.
17. (財)国土技術研究センター 編集・発行・国土交通省道路局地方道環境課 監修 (2001), *バリアフリー 歩行空間ネットワーク 形成の手引き*, 大成出版社.
18. 한국토지주택공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센터 홈페이지, <http://bfcc.lh.or.kr>.
19.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홈페이지, <http://bf.koddi.or.kr>.
20. 통계청, <http://www.nso.go.kr>.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참고-1. 여객시설 인증지표의 평가항목 및 기준기준

범주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매개시설	1.1 접근로	1.1.1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	보도와 차도의 분리 평가	3
		1.1.2 종합안내소로의 접근	종합안내소로의 접근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동선 및 안내시설의 설치 평가, 종합안내소의 설치 위치 평가	2
		1.1.3 유효폭	휠체어사용자가 통행 할 수 있는 보도 또는 접근로의 유효폭 확보 평가	2
		1.1.4 단차	대지 내를 연결하는 모든 보도 및 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진행방향상의 단차 평가	2
		1.1.5 기울기	보도 등의 진행방향 기울기 평가	2
		1.1.6 바닥 마감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이음새, 그리고 마감정도의 평탄함 평가	2
		1.1.7 보행장애물	접근보행통로 상에 보행장애물이 제거되어 보행안전 통로로서 연속성이 확보 되고, 차도와의 경계부분에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 설치 평가	2
		1.1.8 배수로 덮개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 표면 높이가 동일하고,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없는 덮개 설치 평가	1
		1.1.9 차량 진출입부	차량이 보도 등을 통과하는 차량 진출입부의 턱 낮추기 및 바닥 마감 평가	2
		1.1.10 턱 낮추기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의 턱 낮추기 및 경사로 설치 평가	2
	1.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1.2.1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 등이 출입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근접 설치 평가	3
		1.2.2 주차면수 확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적정 주차면수 확보 평가	2
		1.2.3 주차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규정에 적합 평가	2
		1.2.4 보행안전 통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안전통행로의 폭 및 연속성 평가	2
		1.2.5 안내 및 유도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안내 및 유도표시를 평가하여 바닥에 장애인이 쉽게 전용주차장표시 및 입식안내표시의 설치 평가 주차장의 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 및 주차구역까지 적정 유도표시의 연속성 평가	2
	1.3 주출입구 (문)	1.3.1 주출입구(문)의 높이차이	주출입구(문)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진입 가능 한지 정도를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와 기울기 평가	3
		1.3.2 주출입문의 형태	해당시설의 주출입문의 형태 평가	2
		1.3.3 유효폭	주출입문의 통과 유효폭 확보 평가	2
		1.3.4 단차	주출입문 턱의 높이 차이 평가	2
		1.3.5 전면 유효거리	주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 확보 평가	2
1.3.6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주출입문의 손잡이 형태 및 적정 높이 평가	2	
1.3.7 경고블록		시각장애인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경고표시의 설치 평가	2	
내부시설	2.1 통로	2.1.1 유효폭	복도의 유효폭 평가	2
		2.1.2 단차	복도의 바닥면 단차 평가	2
		2.1.3 바닥 마감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함 평가	2
		2.1.4 보행장애물	복도의 벽면을 따라 보행하기에 부적절한 벽면 돌출물 제거 평가	2
		2.1.5 손잡이	복도측면에 연속손잡이 설치 및 손잡이 규격 확보 평가	2
		2.2 계단	2.2.1 계단의 형태 및 유효폭	계단의 형태 및 유효폭 정도 및 난간하부에 추락방지턱 설치 평가
	2.2.2 철크면 및 디딤판		계단의 철크면 및 디딤판 설치와 식별 평가	2
	2.2.3 바닥 마감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도와 계단코의 미끄럼방지설비 설치 평가	2
	2.2.4 손잡이		계단 측면 연속된 손잡이의 높이 및 굽기 평가	2
	2.2.5 점형블록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의 점형블록 설치 및 손잡이 점자표기 평가	2
	2.3 경사로	2.3.1 유효폭	경사로 유효폭 확보 평가	2
		2.3.2 기울기	경사로의 기울기 평가	2
		2.3.3 바닥 마감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도와 계단코의 미끄럼방지설비 설치 평가	2
		2.3.4 활동공간 및 휴식참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휴식참에 활동공간 확보, 높이 0.75m내 마다 휴식참 설치 평가	2
		2.3.5 손잡이	경사로의 양측면 손잡이 높이 및 굽기 평가	2
	2.4 승강기	2.4.1 설치장소	승강기의 설치장소 평가	2
		2.4.2 전면 활동공간	승강기 전면 활동공간 확보 평가	2
		2.4.3 크기	승강기 출입문의 유효통과폭 평가	2
		2.4.4 이용자 조작설비	외부 조작설비 형태 및 설치 높이 평가	1
		2.4.5 수평손잡이	승강기 내부에 연속된 수평손잡이 설치 평가	1
2.4.6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시설		승강기 및 각 층의 승강장의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안내장치 설치 여부로 평가	1	
2.4.7 점자블록		승강기 내부에 연속된 수평손잡이 설치 여부 평가	1	

범주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위생시설	3.1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3.1.1 장애인형별 대응 방법	화장실 평면구성의 장애인형별 대응 방법에 따른 평가	5
		3.1.2 안내표지판 설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이용 안내표지판 설치 평가	5
	3.2 화장실의 접근	3.2.1 접근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모든 통로의 유효폭 및 단차 평가	3
		3.2.2 바닥 마감	화장실 바닥 마감의 평탄함 및 미끄러지는 정도 평가	2
		3.2.3 출입구(문)	출입구(문)의 형태 및 유효폭의 휠체어 접근 가능 정도와 화장실 입구에 점자블록 및 점자표지판 설치 평가	3
	3.3 대변기	3.3.1 칸막이 출입문	칸막이의 출입문 유효폭의 휠체어 접근 가능 정도 및 출입문의 형태 평가 칸막이 사용여부 시각설비 여부와 손잡이 및 잠금장치 형태 평가	2
		3.3.2 활동공간	대변기 내부 유효 바닥면의 크기 평가	2
		3.3.3 형태	대변기의 형태 및 설치 높이 평가	2
		3.3.4 손잡이	대변기 수평 및 수직손잡이 재질과 굵기, 설치 높이 평가	2
		3.3.5 기타설비	대변기의 기타설비 평가	2
	3.4 소변기	3.4.1 소변기 형태 및 손잡이설치	소변기의 형태 및 수평수직손잡이 굵기, 설치 높이 평가	2
	3.5 세면대	3.5.1 형태	세면대의 형태 평가	2
		3.5.2 거울	세면대 거울의 휠체어사용자의 사용 가능 평가	2
		3.5.3 수도꼭지	세면대 수도꼭지 형태 평가	2
	안내시설	4.1 점자블록	4.1.1 설치 위치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점자블록의 설치 평가
4.2 안내설비		4.2.1 안내판 설치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점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평가	4
		4.2.2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안내장치의 설치 여부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주출입구까지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의 연속적인 설치 평가	3
		4.2.3 청각장애인 안내설비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안내표시 설치의 적정성 평가	3
4.3 경보 및 피난설비		4.3.1 시각청각 장애인 경보 및 피난 설비	비상시 시각·청각장애인이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벨 또는 음성안내 등 시각경보 시스템 및 경광등 또는 문자안내 등 청각경보시스템의 설치 평가	5
4.4 접수대 및 안내소	4.4.1 설치장소	접수대 및 안내소의 접근 통로의 단차와 지지간격 설치 평가	2	
	4.4.2 설치 높이 및 하부공간	접수대 및 안내소 설치 높이와 하부공간 확보 평가	2	
기타시설	5.1 매표소 및 판매기	5.1.1 매표소	휠체어사용자가 사용하는데 편리한 매표소 높이와 하부공간 확보의 평가	2
		5.1.2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동전투입구, 조작버튼, 상품출구 등의 이용 가능한 범위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 등의 평가	2
	5.2 개찰구	5.2.1 통과 가능한 별도의 개찰구	자동개찰구인 경우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위치에 설치 평가	3
		5.2.2 통과 유효폭	휠체어가 통과 가능한 유효폭 평가	3
	5.3 승강장	5.3.1 기울기	완만한 승강장 바닥 기울기 정도 평가	2
		5.3.2 바닥 마감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함 평가	2
		5.3.3 점형블록	승강장의 가장자리에 위험방지용 점형블록 설치유무 평가	2
		5.3.4 승강장과 차량간격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승강장과 차량간격을 유지하거나 어려울 경우 승하차를 도울 수 있는 설비 평가	2
		5.3.5 스크린도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시각장애인 및 노인·어린이를 위한 설비 평가	2
		5.3.6 휠체어 사용자의 승차위치 표시	차량에 휠체어사용자의 전용좌석을 안내하는 승차위치 안내판 설치 평가	2
종합평가		5% (평가항목의 총점기준)		
총 지표 수	75	총 배점	168	

참고-2. 인증평가 수준에 따른 지역별 대상시설 현황

수준	대상시설		시설수
	지역	시설명	
상	인천	인천종합터미널	29
	경기	가평터미널, 광명종합터미널, 부천터미널소풍, 서수원버스터미널, 안중터미널	
	강원	속초고속터미널, 원주고속버스터미널, 화천공영버스터미널, 횡성시외버스터미널	
	충북	옥천시외버스공영정류소,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충주공용버스터미널	
	충남	조치원공용버스터미널,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전북	남원공용버스터미널	
	전남	강진버스여객터미널, 중마버스터미널, 구례공용버스터미널, 순천종합버스터미널, 여수종합버스터미널	
	경북	안동버스터미널, 포항고속버스터미널,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중	경남	고성여객자동차 터미널, 창원종합버스터미널, 마산고속버스터미널,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	44
	부산	부산서부버스터미널	
	대구	동양고속버스터미널, 한진고속버스터미널	
	대전	대전북합터미널	
	울산	울산시외버스터미널, 울산고속버스터미널	
	경기	화정버스터미널, 동두천터미널, 시흥종합버스터미널, 안산버스터미널, 안성종합버스터미널, 죽산시외버스터미널, 전곡터미널, 용인버스터미널	
	강원	동해시공영버스터미널, 춘천시외버스터미널, 홍천시외버스터미널	
	충북	단양시외버스공영터미널 제천버스터미널, 증평터미널, 진천종합터미널	
	충남	당진버스터미널, 보령종합터미널, 서산버스터미널, 아산동양고속터미널, 아산시외버스터미널, 예산터미널, 천안버스터미널, 태안공용버스터미널	
	전북	남원고속버스터미널, 익산공용버스터미널, 정읍버스터미널	
하	전남	광양터미널, 목포종합버스터미널, 별교공용터미널, 장성공용버스터미널, 진도공용터미널	144
	경북	구미종합터미널, 시외버스공용정류장, 상주시외버스터미널, 영천버스터미널, 의성시외버스터미널	
	경남	양산시외버스터미널, 통도사신평시외버스터미널	
	서울	서울센트럴시티터미널,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서울서부시외버스터미널	
	부산	부산종합터미널	
	대구	대구서부정류장, 대구동부시외버스터미널, 대구북부시외버스터미널, 시외버스남부공동정류장, 중앙고속버스터미널,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	
	인천	강화여객자동차 터미널	
	광주	광주종합터미널	
	대전	대전유성터미널, 대전서부터미널	
	울산	언양시외버스터미널	
상	경기	성남종합터미널, 수원버스터미널, 양평터미널, 태평버스정류소, 여주종합터미널, 장호원버스터미널, 이천종합터미널, 평택고속버스터미널(동양고속), 평택공용버스터미널, 운천시외버스터미널, 조암공용버스터미널	144
	강원	강릉고속버스터미널, 강릉시외버스터미널, 동해고속버스터미널, 도계버스터미널, 삼척고속버스터미널, 삼척종합버스터미널, 원주시외버스터미널, 원릉버스터미널, 인제시외버스터미널, 고한사북공영버스터미널, 정선버스터미널, 춘천고속터미널, 태백버스정류장, 장평버스정류장, 대화버스터미널, 진부시외버스터미널	
	충북	보은시외버스공영정류장, 감곡공용정류장, 무극공용버스정류장, 음성공용버스터미널, 제천고속버스터미널, 충주북부여객터미널	
	충남	유구터미널, 금산시외고속버스터미널, 논산금호고속, 삼교천버스터미널, 합덕버스터미널, 광천터미널, 홍성터미널	
	전북	고창공용버스터미널, 해리공용터미널, 흥덕공용버스터미널, 군산시외버스터미널, 대야공용버스터미널, 김제종합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월지리산공용버스터미널, 무주공용버스터미널, 부안공용버스터미널, 순창공용버스정류장, 고산여객자동차 터미널, 삼례공용버스터미널, 대둔산터미널, 익산고속버스터미널, 금마공용버스터미널, 강진공용버스터미널, 관촌공용버스터미널, 오수버스공용정류장, 임실공용터미널, 장계시외공용버스터미널, 장수공용버스터미널, 전주시외버스공용터미널, 진안시외버스고용정류장	
	전남	마량버스여객터미널, 녹동버스공용정류장, 고흥공용정류장, 과역버스터미널, 곡성버스터미널, 나주버스터미널, 동창공용버스터미널, 영산포공용터미널, 담양여객버스터미널, 무안버스터미널, 보성버스터미널, 지도여객자동차 터미널, 여천시외버스정류장, 법성포터미널, 영광종합터미널, 홍농버스터미널, 삼호종합버스터미널, 영암여객자동차 터미널, 독천터미널, 완도공용터미널, 장흥터미널, 회진시외버스터미널, 대덕시외버스터미널, 문정공용터미널, 해남종합버스터미널, 화순군내버스터미널, 화순시외버스공용정류장	
	경북	경주고속버스터미널, 경주시외버스터미널, 선산터미널, 군위터미널, 점촌터미널, 문경버스터미널, 봉화공용정류장, 춘양공용버스정류장, 영덕터미널, 양양버스정류장, 영주공용버스터미널, 예천시외버스터미널, 울진시외버스터미널, 더리원버스터미널, 대천공용자동차여객터미널, 청송버스터미널	
	경남	고현버스터미널, 거창버스터미널, 배둔시외버스터미널, 김해여객터미널, 남해공용터미널, 밀양버스터미널, 곤양공용터미널, 남해공용터미널, 밀양버스터미널, 곤양공용터미널, 삼천포터미널, 의령버스터미널, 진주고속버스터미널, 반성터미널, 남지버스터미널, 부곡버스터미널, 창녕○시외버스터미널, 마산시외버스터미널, 통영종합버스터미널, 하동터미널, 함안버스터미널, 안의시외버스터미널, 함양시외버스터미널, 합천버스정류장	

참고-3. 세부 평가지표별 획득점수 현황

시설별	분류별	지표별	배점	획득점수		획득점수 비율(%)		
				최고점	평균	최고점	평균	
매개 시설	접근로	보차분리	3	3	1.86	100.0	62.0	
		배수덮개	1	1	0.58	100.0	58.0	
		차량진출입부	2	2	0.33	100.0	16.5	
		횡단보도턱낮춤	2	2	1.12	100.0	56.0	
		종합안내소접근성	1	0	0	0.0	0.0	
		종합안내소위치	1	0	0	0.0	0.0	
		유효폭	2	2	1.17	100.0	58.5	
		단차	2	2	1.29	100.0	64.5	
		기울기	2	2	1.44	100.0	72.0	
		바닥마감	2	2	1.37	100.0	68.5	
		보행안전공간	1	1	0.15	100.0	15.0	
		보도차도경계처리	1	1	0.66	100.0	66.0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위치	3	3	0.67	100.0	22.3	
		주차면수	2	2	0.97	100.0	48.5	
		주차구역	2	2	0.39	100.0	19.5	
		보행통로	2	1.4	0.02	70.0	1.0	
		유도 및 안내	2	1.6	0.37	80.0	18.5	
	주출입구 (문)	단차	1.5	1.5	0.83	100.0	55.3	
		경사로	1.5	1.5	0.61	100.0	40.7	
		출입문 형태	2	2	0.17	100.0	8.5	
		출입문 유효폭	2	2	1.94	100.0	97.0	
		출입문 단차	2	2	1.69	100.0	84.5	
		전후면 유효거리	2	2	1.02	100.0	51.0	
		손잡이&점자표지	2	2	1.26	100.0	63.0	
		경고블록	2	2	0.35	100.0	17.5	
	내부 시설	통로	유효폭	2	2	1.46	100.0	73.0
			단차	2	2	1.7	100.0	85.0
			바닥마감	2	2	1.09	100.0	54.5
			보행장애물	2	2	1.96	100.0	98.0
			손잡이	2	2	1.96	100.0	98.0
계단		형태 및 유효폭	2	2	1.92	100.0	96.0	
		첼면 및 디딤판	2	2	1.96	100.0	98.0	
		바닥마감	2	2	1.97	100.0	98.5	
		손잡이	2	2	1.9	100.0	95.0	
		점형블록	2	2	1.92	100.0	96.0	
경사로		유효폭	2	2	1.97	100.0	98.5	
		기울기	2	2	1.96	100.0	98.0	
		바닥마감	2	2	1.98	100.0	99.0	
		활동공간 및 휴식참	2	2	1.97	100.0	98.5	
		손잡이	2	2	1.95	100.0	97.5	
승강기	설치장소	2	2	1.89	100.0	94.5		
	전면 활동공간	2	2	1.99	100.0	99.5		
	승강기크기	2	2	1.95	100.0	97.5		

참고-3. 세부 평가지표별 획득점수 현황(계속)

시설별	분류별	지표별	배점	획득점수		획득점수 비율(%)	
				최고점	평균	최고점	평균
내부 시설	승강기	조작설비높이	0.5	0.5	0.49	100.0	98.0
		내부가로 조작설비	0.5	0.5	0.49	100.0	98.0
		내부손잡이	1	1	0.99	100.0	99.0
		시각 및 청각 안내설비	1	1	0.98	100.0	98.0
		점형블록	1	1	0.98	100.0	98.0
위생 시설	장애인 이용가능한 화장실	설치방법	5	5	2.72	100.0	54.4
		안내표지	5	5	0.25	100.0	5.0
	화장실의 접근	단차	1.5	1.5	0.94	100.0	62.7
		점형블록	1.5	1.5	0.12	100.0	8.0
		바닥마감	2	1.6	1.27	80.0	63.5
		출입구(문)	3	3	1.87	100.0	62.3
	위생시설 대변기	칸막이 출입문 유효폭	0.5	0.5	0.21	100.0	42.0
		출입문 형태	0.5	0.5	0.17	100.0	34.0
		사용여부 확인설비	0.5	0.5	0.17	100.0	34.0
		잠금장치	0.5	0.5	0.26	100.0	52.0
		활동공간	2	2	0.41	100.0	20.5
		형태	2	2	1.01	100.0	50.5
		손잡이	2	1.6	0.52	80.0	26.0
	기타설비	2	2	0.3	100.0	15.0	
	소변기	형태 및 손잡이	2	2	0.72	100.0	36.0
세면대	형태	2	2	1.35	100.0	67.5	
	거울	2	2	1.1	100.0	55.0	
	수도꼭지	2	2	0.16	100.0	8.0	
안내 시설	점자블록	설치위치	5	5	1.46	100.0	29.2
	안내설비	안내판	4	4	0.2	100.0	5.0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3	3	0.19	100.0	6.3
		청각장애인 안내설비	3	3	1.01	100.0	33.7
	경보 및 피난 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5	5	0.08	100.0	1.6
	안내소	설치장소	2	1.6	0.74	80.0	37.0
안내소구조		2	0	0	0.0	0.0	
기타 시설	매표소 및 판매기	매표소	2	2	0.05	100.0	2.5
		자동발매기	2	0	0	0.0	0.0
	개찰구	개찰구	3	0	0	0.0	0.0
		통과유효폭	3	0	0	0.0	0.0
	승강장	기울기	2	1.6	1.35	80.0	67.5
		바닥마감	2	1.6	1.15	80.0	57.5
		점형블록	2	1.6	0.05	80.0	2.5
		승강장과 차량간격	2	0	0	0.0	0.0
스크린도어		2	0	0	0.0	0.0	
승차위치표시	2	0	0	0.0	0.0		